

#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노부권 소유물건 (2025타경 31963)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감정평가서 번호	대한 제251103-17-0002호



2025.11.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허브 8층  
TEL : (053)761-7890 FAX : (053)761-7888



(주)대한감정평가법인  
KOREA APPRAISAL CO., LTD.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영수

이영수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최탁수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삼억오백만원정 (₩305,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경매6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노부권 (2025타경 31963)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5.11.04	2025.11.03 2025.11.04
		작성일	2025.11.04

감정평가 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sup>2</sup> )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sup>2</sup> ) 또는 수량	단가(원/m <sup>2</sup> )	금액(원)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305,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05,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권정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1.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소재 “달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중리롯데캐슬” 제111동 제5층 제503호 단위세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경매6계)”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2. 대상물건의 개요

대상물건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26-1번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12)
건물명 및 층·호수	중리롯데캐슬 제111동 제5층 503호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사용승인일자	2009.10.12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해당 동/층/호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가	제111동 제5층 제503호	84.984	58.903	143.887	59.06	41.1711	아파트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1월 04일입니다.

####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물건에 대하여 2025년 11월 03일, 04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대상물건의 위치는 현황 점유부분 및 건축물대장상 현황 평면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또한 구분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하여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경매진행시 참고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 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지침” 및 지역적특성, 대상부동산의 성격 등에 의거하여 배분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내부구조, 설비 및 마감상태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하여 동유형 단위세대의 표준적 내부구조, 사용자재 및 통상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 1. 감정평가의 근거

####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p>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li> <li>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li> <li>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li> <li>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li> </ul>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p>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li> <li>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li> <li>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li> </ul>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li> <li>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li> <li>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li> </ul>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p>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p>	<p>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p>
--------------------------------------	---

##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a	중리동 26-1	중리롯데캐슬 제120동 제00층 제0000호	84.99	2025.07.11	315,000,000	약 3,706,000	아파트
				2009.10.12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 나.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㉑	중리동 26-1	중리롯데캐슬 제120동 제00층 제0000호	84.984	경매	2025.07.21	312,000,000	약 3,671,000	아파트
					2009.10.12			
㉒	중리동 26-1	중리롯데캐슬 제121동 제00층 제0000호	84.984	경매	2024.03.07	303,000,000	약 3,565,000	아파트
					2009.10.12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전산센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유형	부동산 가치수준
공동주택	전유면적당 단가: 3,400,000원/㎡ ~ 3,700,000원/㎡ 수준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가. 비교사례의 선정

최근 거래된 사례 중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대상물건
				사용승인일			
a	중리동 26-1	중리롯데캐슬 제120동 제00층 제0000호	84.99	2025.07.11	315,000,000	약 3,706,000	가
				2009.10.12			

### 나.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시점수정

### 1) 개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 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의 매매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2) 시점수정치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거래시점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가	a	매매가격지수 (대구 서구 (아파트))	2025년 06월	2025년 09월
			98.4	97.4

### 3) 시점수정치 산정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산정기간)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치 산정
가	a	대구 서구 (아파트) 2025.07.11 ~ 2025.11.04	0.98984	$1 + ((97.4 - 98.4) / 98.4)$ ≒ 0.9898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분건물 [주거용] 본건: 가 ( 사례기호: a )

조 건	세부항목	비교치	검토의견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1.00	대체로 유사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0.98	층별, 향별 효용에서 열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격 차 을			0.98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거래사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 면적 (㎡)	산정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3,706,000	1.00	0.98984	0.980	3,594,980	84.984	305,515,780	305,000,000

## Ⅳ.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전유면적 (㎡)	대지권 (㎡)	감정평가액(원)	비고 (전유면적㎡당 단가)
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26-1	중리롯데캐슬 제111동 제5층 제503호	84.984	41.1711	305,000,000	3,588,000
합 계					305,000,000	

#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서표

<기준시점 : 2025-11-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12	26-1 중리 롯데캐슬 제111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0층				
				(재활용 참고)	1층	19.175		
				(아파트)	1층	351.586		
			(아파트)	2~20층	각 436.564			
				대	96,083.5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3호	84.984	84.984	305,000,000	
			1소유권대지권	41.1711				
				-----	41.1711			
					96,083.5			
								토지·건물
							토 지 :	91,500,000
							건 물 :	213,500,000
<b>합 계</b>							<b>₩305,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소재 "달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중리롯데캐슬" 제111동 제5층 제503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학교,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3) 건물의 구조

(가)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0층건내 제5층 제5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화강석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원목마루,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입니다.

###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 (5) 설비내역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열병합발전 지역난방 설비 되어 있습니다.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7) 인접 도로상태 등

북측으로 폭 약 30미터,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서2(특수도로))(접합), 종로1류(폭 20m~25m)(2020-10-12)(저축), 종로2류(폭 15m~20m)(2021-11-01)(종로2-18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덕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구달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구중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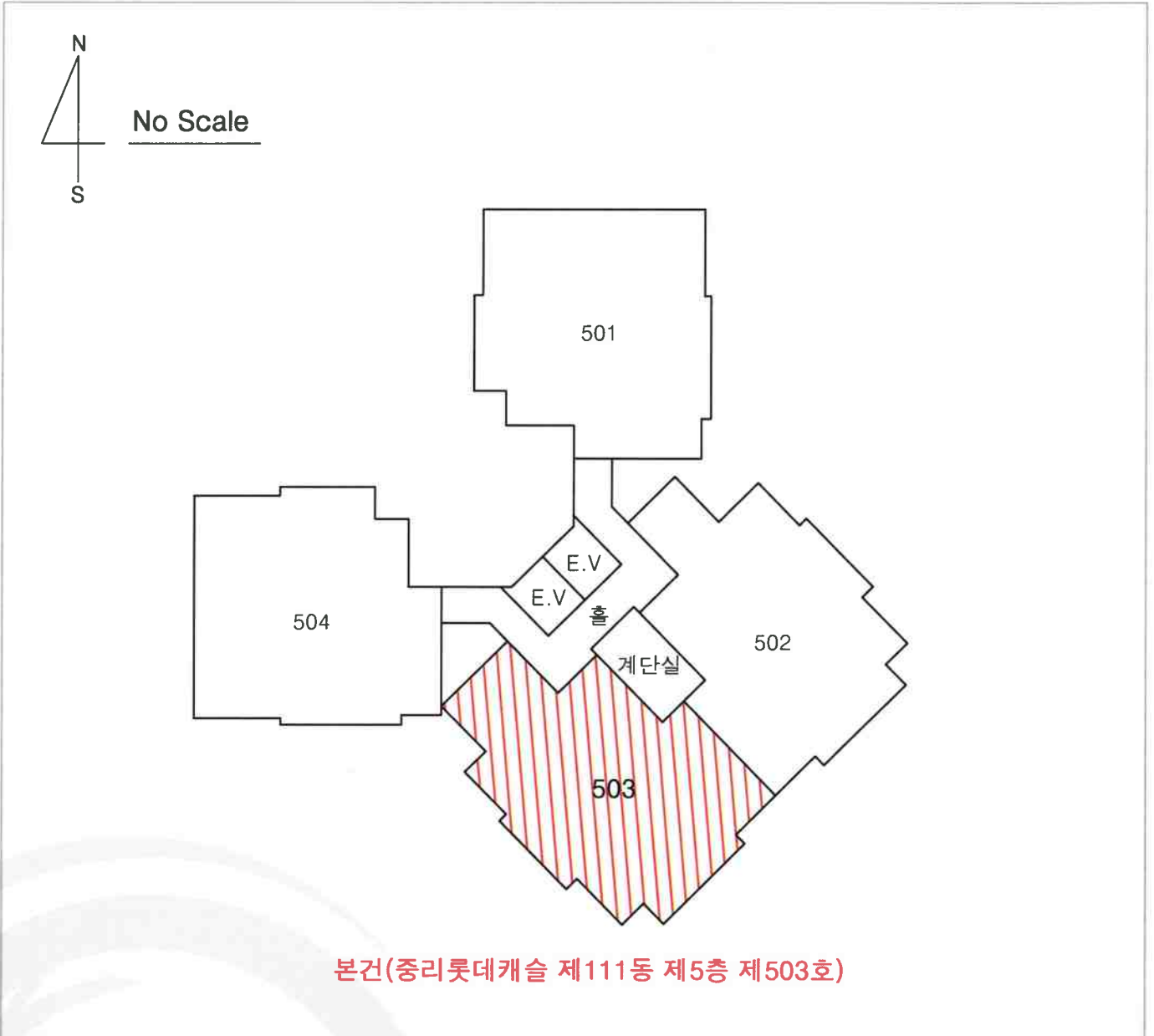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26-1번지



본건(중리롯데캐슬  
제111동 제5층 제503호)

# 건물개황도 및 임대상황



본건(중리롯데캐슬 제111동 제5층 제503호)

## 임대상황

범례	임차인성명	임대조건		조사처	비고
		보증금	월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진 용지



본 건



본 건